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21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전종덕 · 소병훈 · 김선민
고민정 · 한창민 · 용혜인
윤종오 · 정혜경 · 손 솔
김준형 · 강경숙 · 정춘생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함)는 군사보안, 정보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내란·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등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하였음.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여론 조작 등 방첩사 또는 그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그간의 수사권 남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그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제4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시행 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

조제2호에 따라 임명된 군사법경찰관 또는 종전의 제46조제2호에 따라 임명된 군사법경찰리는 이 법 시행일에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에서 각각 해임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생략)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4. (생략)	제43조(군사법경찰관)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4. (현행과 같음)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
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
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
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와 「국가보안법」, 「군사기
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
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제46조(군사법경찰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
吏)로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
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
조한다.

1. (생략)

2.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

제46조(군사법경찰리)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u>하는 사람</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